

信用狀 統一規則 第5次 改正案*

梁 暎 煥**

貿易去來의 大宗을 이루는 商品의 輸出入은 그 主體인 賣渡人과 買受人間의 國際間 物品賣買契約을 主契約으로 하고 그 履行을 위한 三大支柱인 國際運送, 海上保險 및 貿易決濟 등의 從屬契約에 의해 具體化되어 진다.

특히 貿易決濟手段으로서의 信用狀은 貿易去來에서의 代金決濟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輸入商의 去來銀行이 輸入商의 要請과 指示에 따라 輸出商 앞으로 發行하는 것으로 輸出商이 提示하는 貿易書類가 信用狀上의 諸條件과 一致하기만 하면 開設銀行은 書類와 相換으로 支給, 引受, 延支給 또는 買入을 確約하는 證書이다.

履行未畢賣買를 특성으로 하는 貿易賣買에 있어서 信用狀制度는 約定品の 引渡와 그 代金의 決濟를 同時履行의으로 構成함으로써 賣買當事者가 現品 相換給과 같은 效果를 갖는 去來를 한다는 特長을 가질 뿐만 아니라 輸出商과 輸入商 사이에 信用있는 外國換銀行이 介入함으로써 특히 輸出商의 입장에서는 信用狀制度는 輸入商의 支給不能 또는 支給拒絶 등의 信用危險을 除去하며, 金融上의 便益을 누릴 수 있고, 나아가서 輸入國의 戰爭, 內亂, 革命, 外換管理 및 輸入制限 등 移轉危險도 이를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도록

* 大韓商事仲裁院의 「仲裁」 第16卷 第11號(1992. 11)에 수록된 글을 筆者의 承認을 얻어 一部 補完·介在함.

** 成均館大學校 貿易學科 教授, 經濟學 博士.

하는 機能을 갖는다.

銀行이 信用狀의 發行者로서 介入하게 된 것은 이미 19世紀 부터였지만, 當時의 銀行信用狀도 역시 旅行者 信用狀의 범주에 그쳤으며, 信用狀의 開設依賴人인 輸入商이 指名하는 輸出商인 受益者 앞으로 銀行이 자신이 發行한 信用狀에 의거, 開設依賴人을 代身하여 어음을 支給하는 것과 같은 近代의 意味의 商業信用狀은 20世紀에 들어서 비로소 生成·發展하였다.

20世紀에 들어서면서 第1次 世界大戰을 계기로 國際商圈의 中心이 英國에서 美國으로 옮겨지자 賣渡人 主導市場이 된 美國의 輸出商은 換率變動의 危險을 줄이고 또 賣出價權의 確保를 위하여 信用狀을 要求하게 되었으며 특히 1914年 美聯邦準備法이 制定되어 銀行이 貿易金融業務를 開始함으로써 貿易決濟手段으로서 信用狀의 發給이 急增하였다.

그러나 各國이 사용하는 貿易決濟手段으로서 信用狀의 形式과 內容이 定型化되지 못하여 많은 國際間의 紛爭이 발생하였다. 물론 各國은 自國內에서 信用狀의 形式이나 用語 및 解釋에 統一을 기하는 努力이 있어왔고 統一規則도 制定되었지만 信用狀에 관한 各國의 慣習이 다르므로 採擇된 規則도 各國마다 그 內容을 달리하였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信用狀去來는 國際間의 去來이기 때문에 國內의 統一만으로는 國際間의 紛爭을 피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를 國際적으로 統一하기 위하여 國際商業會議所(ICC)를 中心으로 國際統一化作業이 계속되어 오다가 1933년 ICC 第7次 總會에서 信用狀統一規則(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UCP)이 正式으로 採擇·公表되었다.

信用狀 統一規則은 第2次 世界大戰後 나타난 새로운 慣行을 수용하고 貨

換信用狀의 適用範圍가 全體의 90%를 차지하는 만큼 擴大됨에 따라 時宜에 맞게 개정되어 져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信用狀 統一規則 改正의 實質的 作業을 담당하는 ICC의 銀行技術 및 實務委員會(Commission on Banking Technique and Practice)는 當時 世界貿易의 主導權을 갖게된 美國의 實務慣行을 대폭 반영하여 그 改正案을 마련하였으며 1951年 ICC 第13次 總會에서 採擇됨으로써 第1次 改正이 이루어졌다. 第1次 改正 信用狀 統一規則은 制定當時에 比하여 크게 進歩되었으며 採擇國家數가 1962年 3月 1日 現在 77個國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직 英國과 英聯邦의 一部國家들이 英國의 慣行을 固守하고 採擇하지 않았다.

1952年 1月부터 적용단계에 들어간 第1次 改正 信用狀 統一規則이 그 運用上의 問題가 많다는 美國側 위원들의 主張에 따라 改正案을 檢討하던 중 1961年 英國이 EC에 가입을 앞두고 信用狀 統一規則을 採擇할 뜻을 나타냄으로써 英國系와 大陸系의 銀行慣習을 均衡있게 수용하여 1962年 12月 第2次 改正에 성공하였다.

第2次 改正후에 世界貿易環境은 크게 變化하였다. 특히 國際運送에 있어서 1960年代 以後 컨테이너의 출현으로 複合運送方式이 一般化되었으며 이에 따른 信用狀慣行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問題點이 發生하였으며 또 東西貿易이 활발하게 進전되자 東歐諸國의 銀行慣行을 信用狀 統一規則에 반영하기 위하여 이 統一規則의 改正·補完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ICC는 1973년부터 信用狀 統一規則의 改正作業에 착수하여 1974年 12월에 改正案을 채택하였고 1975年 4월에 UNCITRAL의 承認을 받아 1975年 10월부터 施行하게 되었다. 결국 第3次 改正 信用狀 統一規則은 당시의 東

歐共產諸國과 開途國의 意見까지 폭넓게 수렴한 명실상부한 世界的 統一規則으로 評價받게 되었다.

信用狀 統一規則은 第1次 改正後 每 10年마다 한번씩 改正되어 온 셈인데 第3次 改正 이후에 國際商去來의 類型에 큰 변화가 생겼다. 즉, 단순한 商品交易에서 現地生産이나 海外直接投資 등이 활발해지고 中·長期의 償還을 必要로 하는 플랜트, 船舶 및 建設輸出 등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에 따라 信用狀이 支給保證이나 入札 및 履行保證 등의 用途에 사용되게 되었다.

한편 第3次 信用狀 統一規則 改正에서는 콘테이너 船貨證券을 規定하기는 하였으나 運送技術의 發達에 따른 다양한 複合運送證券 등 去來上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第3次 改正 이후에 改正 또는 制定된 共同海損, 海上物品運送, 어음推尋, 인코텀즈, 統一賣買法, 複合運送, 新積荷保險約款 등 信用狀 統一規則과 不可分の 關聯이 있는 각종의 貿易關係 國際規則과의 조화를 위해서 보다 明瞭한 改正이 要求되었다. 이에 ICC의 銀行委員會는 1979年 信用狀 統一規則의 改正을 위한 作業部를 設置, 改正作業에 착수하여 最終確定案이 1983年 6月 理事會를 거쳐 ICC 公表 第400號로 公布되었으며 第4次 改正의 最終案이 前述한 UNCITRAL의 公認을 받아 1984年 10月 1日부터 現在까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現行 信用狀 統一規則(UCP 400)이 施行된 以後에도 世界貿易環境 및 慣習에 많은 變化가 있었으며 지난 10년 가까이 이를 運用하는 동안에도 그 解釋과 適用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있어 왔다. 이때마다 ICC의 銀行技術 및 實務委員會는 充分한 討議를 거쳐 公式的인 有權解釋을 해 왔으며 이를 모아 그 동안 세차례의 意見書 모음집을 발행한 바 있다.

금번의 改正 信用狀 統一規則(UCP 500)의 改正作業은 역시 ICC 銀行技術 및 實務委員會가 1990年 6月 합부루그 會議의 趣旨를 계기로 그 基礎資料를 수집하고 檢討하는데서부터 시작되었다. 그후 ICC銀行委員會는 이태리의 Salvatore Maccarone 教授를 議長으로 하고 美國의 Boris Kozolchyk 教授와 英國, 美國, 獨逸 및 노르웨이 출신의 銀行代表者들이 참여하여 信用狀 統一規則의 改正을 위한 作業部(Working Group)를 構成하여 本格的인 改正作業에 着手하였다. 最初의 改正試案은 同作業部에서 各國의 國內委員會가 제공한 慣行事例, Kozolchyk 教授, Maccarone 教授 및 Mattout 氏가 발췌한 主要判例, 그리고 銀行技術·實務委員會가 지금까지 발간한 前述한 意見書 및 事例研究集 등을 기초로 하여 우선 1991年 6월에 現行 統一規則 第1條~第24條와 第54條~第55條에 대한 改正試案(ICC DOC. 470-37/4)을 발표하였다.

이 改正試案에서 ICC 銀行委員會 作業部는 信用狀 統一規則 改正의 主要目的과 方向을 ① 現行統一規則의 各條項을 簡素化하고 ② 現實的인 銀行慣習과 調和를 이루게 하고 ③ 거의 標準化되고 統一된 銀行慣習을 受容하고 ④ 信用狀의 取消不能性を 우선하게 하고, 開設銀行 및 確認銀行의 本源的 義務를 강조하며, 書類에 대한 言及이 없이 條件만 明示하는 信用狀은 이를 排除하고, 또 開設依賴人앞으로 발행되는 換어음과 같은 不合理한 慣習을 削除하면서 ⑤ 점차 발달과정에 있는 特히 保證信用狀과 電子方式 信用狀의 慣習을 受容하는데 둔다고 밝히고 있다.

그후 同作業部는 Charles del Busto를 議長으로 하고 Kozolchky 教授를 비롯하여 英國, 美國, 獨逸, 불란서 및 노르웨이 출신 專門家 10名으로 再

構成되어 1991年 8月과 10월에 會議을 續開하여 運送書類에 관련된 現行 信用狀 統一規則의 第25條~第27條와 第29條~第30條에 대한 改正試案(ICC Doc. 470-37/37)을 추가로 公표하였다. 여기에서 同作業部는 運送書類에 관한 條項들을 전체적인 改正方向에 맞도록 정리하고 그 註釋文을 내놓는데 중점을 두었다. 特히 여기서는 運送人의 概念, 運送書類上의 有效한 署名, 運送方式別 換積의 定義, 그리고 第46條 (a)항의 有效期日에 관한 문제를 명백히 規定하는데 意見의 一致를 보았다.

ICC의 銀行技術·實務委員會 作業部는 위와같은 部分的인 改正試案(ICC DOC. 470-37/4, 470-37/5, 470-37/37)에 대한 各國內委員會의 見解를 綜合하여 全體的인 修正·補完을 거쳐 1992年 5月 5일에 第5次 改正 信用狀 統一規則 즉, 「UCP. 500」全文의 改正試案((ICC DOC. 470-37/72)과 各條項에 대한 追加的인 註釋을 함께 公表하였다. 이 綜合的인 改正試案에서는 現行 信用狀 統一規則 第40條의 小損害免責約款의 保險書類와 第42條의 其他書類에 관한 條項을 삭제하였다. 또한 바로 앞에 公表하였던 改正試案(ICC DOC. 470-37/37)의 第26條 非流通 海上運送狀에 관한 條項도 이것의 利用이 극히 制限的이며 國際的으로 잘 認識되어 있지 않다는 理由로 삭제하였다.

이때 公表한 綜合的인 改正試案에 대하여 銀行技術·實務委員會는 1992年 7月 27日까지 各國內委員會의 見解를 最終的으로 수렴하고 기타 별다른 意見이 없으면 이를 곧 最終案으로 採擇할 豫定이었다.

그러나 同委員會의 作業部는 1992年 8월에 다시 會議을 개최하여 종전의 信用狀 統一規則 改正試案(ICC DOC. 470-37/72)에 대한 各國內委員會의 見解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했던 결과, 各國內委員會에서 제기한 여러 見解를 수렴

하고 同作業部에서 간과했던 問題點과 誤謬를 訂正한 實務上的 最終的인 改正試案(ICC DOC. 470-37/104)을 同年 9月 18日에 公表하였다. 특히 이번 公表한 最終的인 改正試案은 運送業系의 강력한 主張을 받아들여 종전의 改正試案(ICC Doc. No. 470-37/72)에서 삭제되었던 非流通 海上運送狀(Non-Negotiable Sea Waybill)에 관한 條項을 다시 挿入하였으며 또 「UCP 400」 第40條의 小損免責約款에 관한 條項을 삭제하였다가 이를 다시 復活하여 總 48個條로 構成하고, 各條項의 註釋文도 追加的으로 變更된 部分에 대해서만 添附하였다.

이번에 公表한 信用狀 統一規則의 最終的인 改正試案은 지난 1992年 11月 13日까지 各國內委員會로부터 마지막 見解를 모으고 뒤이은 11月 19日과 20日에 開催된 ICC銀行委員會 作業部の 會議과 11月23日 ICC銀行委員會의 本會議에 정식으로 上程되었다.

결국 「UCP 500」으로 通稱되는 第5次 改正 信用狀 統一規則은 앞으로 國際 商業會議所 理事會와 UNCITRAL의 承認을 받는 등의 節次를 거쳐 改正案으로 확정되고, 늦어도 1993年 10月 1日이나 1994年 1月 1日부터 施行하기로 결정되어 있다.